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4일

나. 발 의 자: 임헌호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헌호 의원)

가.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상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의 신설로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헌혈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예우 사업을 통해 헌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시행 2023.6.22.)되어 헌혈을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헌혈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예우 사업을 통해 헌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영등포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헌혈과 관련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구청장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안 제8조제1호로 이동시킴.
 - 그 외에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0조)
- 검토 결과
 - 「혈액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혈액의 매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헌혈 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헌혈을 실시한 지역 거주민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 장려를 위한 전국별·지역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 시행될 「혈액관리법」(시행 '23.6.22.) 제4조의8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헌혈을 장려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헌혈 권장을 목적으로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지급 효과 및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한도 및 배부 방법 등을 면면히 검토하여 실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
----------	-----

발의연월일: 2023. 5. .

발 의 자: 임헌호, 신흥식, 전승관
최봉희, 유승용, 김지연
의원(6인)

1.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헌혈실적이 감소하여, 수혈을 위한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 혈액수급위기단계가 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혈액관리법」상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이에, 헌혈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예우 사업을 통해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안 제8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5. 1. ~ 5. 6.)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6”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3과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3”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소정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영등포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절차, 방법 및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혈액관리법」 제4조의4”를 “「혈액관리법」 제4조의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혈액관리법</u>」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혈액관리법</u>」 제 4 조 의 6-----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헌혈권장활동”이란 「<u>혈액관리법</u>」 제4조제1항과 「<u>혈액관리법시행령</u>」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국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 2 조 (정 의) ----- ----- .</p> <p>1. ----- 「<u>혈액관리법</u>」 제4조3과 「<u>혈액관리법시행령</u>」 제2조3----- ----- -----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략)</p> <p>③ <u>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제8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u></p>

원)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소정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영등포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절차, 방법 및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생략)

제9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0조 ~ 제15조 (생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 6-----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 제16조 (현행 제10조

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